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1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8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교회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8. 6. 5.
판 결 선 고	2018.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6. 원고에 대하여 한 10,178,690원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2. 별지1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1

이라 한다)을 원고 대표자인 B으로부터 증여받고, 2011. 5.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5. 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교시설 고유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5. 8. 3.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면제받은 취득세 10,178,690원 및 그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 조세심판원에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1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28호)를 제기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16. 12. 16. 피고가 종전 처분을 하면서 본세와 가산세의 각각의 세액,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종전 처분을 취소한 뒤 2017. 2. 6. 다시 원고에 대하여, 종전 처분과 같은 사유로 면제받은 취득세 10,178,690원 및 그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해당 처분 중 취득세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기적인 예배시설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숙식 · 운동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사용하였고, 다른 교회 등으로부터 일반 숙박업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속 기관, 교인, 교인의 가족들에게 영성 훈련을 위한 기도와 심신 수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취득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교 교육과 영성 수련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일부 대학 기독교선교동아리와 다른 교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개방하기는 하였으나, 실비 변상 성격의 사용료만을 받았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1

1) 원고는 2011. 3. 27. 당회를 열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종교 목적 사업을 위한 수양관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원고의 정관(2011. 4. 25. 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목적 및 사업
>
> 제1조 본 교회는 기독교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본 교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각 기관을 세우고 각 기관을 두어서 해당 임무를 수행한다.
>
> 제4장 임원
>
> 제24조 제1항 본 교회는 성도들의 영성 훈련과 심신 수양 및 기도 장소 제공을 위하여 [redacted]군 C 외 8필지 토지와 건물 4동을 수양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여받기로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게재되어 있었다.

> **○ 수양관 소개**
>
> 할렐루야~ D 수양관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
> D 수양관은 공기 맑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휴양림, 계곡 유명한 산들이 가까운 곳에 있고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모른답니다.
>
> 2,300평의 대지에 약 50~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와 넓은 주방, 샤워장, 화장실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야외 활동을 위한 공간들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
> 침구, 냉난방 시설도 완비되어 있어 교회의 수련 활동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휴양 계획에도 안성맞춤으로 크리스챤의 영적 성장과 재충전을 위한 장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 이곳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인해 쉼과 회복을 누리는 공간이 되길 원합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1

샬롬~~!!!

○ D 수양관 예약 안내

일정보기에서 예약 상황을 확인하신 후 전화주세요. 현재는 전화 예약만 가능합니다.

· 입실시간: 당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밤 10시 이후에 도착하시는 분들은 미리 전화주세요.

· 퇴실시간: 낮 12시까지이며, 다음 예약자가 없을 시에는 퇴실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바비큐장 이용시: 바비큐장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숯과 그릴은 준비해오시면 좋아요^^ (혹 준비 못하시고 오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현장 판매 가능합니다!)

*** 예약 문의 ***

- 주소: [redacted]도 [redacted]군 E(구 주소: [redacted]군 C)

계좌번호: F 우리은행 예금주 원고

○ 사용가격표

샬롬! 수양관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사용료에 관한 문의가 많아서요!

수양관 사용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호실	수용인원	시설물	비고
1층	15~20명	온돌(에어컨)/수납장/샤워실/냉장고/주방/침구류	숙소 전용 집회(모임) 가능
2층	15~20명	〃	〃
부대시설			
남녀샤워실		수납장	객실이용자 무료(야외)
운동시설(다목적구장)		농구장/족구장	객실이용자 무료
식사제공			40명 기준
바비큐장			객실이용자 무료

※ 20명 이상 담당자와 상담 부탁드립니다.

· 성수기 - 여름(7월~8월), 겨울(12월~2월), 공휴일·주말 이용시 성수기 요금 적용됩니다.

※ D 수양관을 찾아주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D 수양관 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기도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연도별 이용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1

연도	원고 소속 교인			다른 교회 소속 교인, 대학교 선교 동아리		
	횟수(개인)	인원(개인)	사용료(원)	횟수	인원	사용료(원)
2011	60(11)	2,054(144)	1,060,000	10	915	6,100,000
2012	67(13)	1,873(160)	260,000	12	1,044	7,750,000
2013	61(12)	1,920(159)	2,060,000	8	936	5,500,000
2014	65(14)	2,274(144)	890,000	12	1,226	7,650,000
합 계	253(50)	8,121(607)	4,270,000	42	4,121	27,000,000

4) 원고는 사용료, 후원금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비를 충당해 왔다. 원고 공동회의 회의록(갑 제14호증)에 기재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결산 내역(연도별 지출액, 수입액 및 수입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연도	지출액(원)	수입액(원)				
		사용료	후원금	기타 수익	이월금액	합계
2011	11,750,000	7,160,000	5,070,000	398,000	-	12,630,000
2012	10,527,290	8,010,000[1]	3,900,000[2]	-	756,485	12,666,485
2013	11,140,000	7,560,000	4,250,000	-	1,200,000	13,011,000
2014	12,050,000	8,540,000	1,000,000	-	3,049,000	12,489,500
합 계	45,467,290					

5) 별지1 제10 내지 13항 기재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구조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1) 회의록(갑 제14호증)에는 '7,0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2년도 사용료의 합계가 8,010,000원(= 원고 소속 교인 사용료 260,000원 + 다른 교회 소속 교인 등 사용료 7,750,000원)인 점에 비추어 '8,01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회의록(갑 제14호증)에는 '4,9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금전출납부 사본(갑 제13호증)에 따르면 2012년도 후원금 또는 지원금의 합계는 3,900,000원(= 1,500,000원 + 300,000원 + 500,000원 + 600,000원 + 1,000,000원)이므로, '3,9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1

건물	건축물대장상 용도	구조
별지1 제10항 기재 건물	근린생활시설(샤워장)	-
별지1 제11항 기재 건물	단독주택(관리실)	-
별지1 제12항 기재 건물	동식물관련시설(다목적구장)	-
별지1 제1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수양관 건물'이라 한다)	다가구주택	1층(방 셋, 거실 하나,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
		2층 (방 셋,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싱크대 하나)

6) 피고 측은 2015. 4. 9.과 5.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장 조사한 결과, ① 이 사건 수양관 건물 2층 거실에 단상과 십자가가 설치된 외에는 내부에 예배·기도를 위한 고정식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겨울철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계절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예배·기도를 하거나 수련회 행사에 따른 숙식을 하는 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1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해당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이 종교 단체가 부동산을 종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인 점, 조세감면규정 중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단서에 규정된 '그 용도에 직접 사용'이란, 종교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의식(예배), 기도, 선교 등과 같은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정관 및 2011. 3. 27.자 당회 의결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사업 목적은 '기독교 복음 전도'이고, 원고는 '종교 목적 사업을 위하여 수양관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인들에게 영성 훈련, 심신 수양, 기도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1

위와 같은 원고의 사업 목적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교의식, 기도, 선교 등을 주된 용도로 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받는다고 해석된다.

다) 그런데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별지1 제10 내지 13항 기재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종교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샤워장), 단독주택(관리실), 동식물관련시설(다목적구장), 다가구주택'이고, 특히 이 사건 수양관 건물은 숙박 용도에 적합하도록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으로 구성된 점, 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에 따르면, 위 각 건물이 방문객의 숙소와 편의시설[샤워실, 운동시설(농구장, 족구장), 바비큐장 등]로 사용된 점, ③ 이 사건 수양관 건물의 2층 거실에 단상과 십자가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면적(이 사건 수양관 건물 2층 면적 118.05㎡ 중 일부)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그 외에는 예배 · 기도를 위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교회 수련 활동 외에 가족 단위 휴양에도 사용된다는 취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소속 기관(아동부, 청년부 등)이 사용한 외에도 원고 소속 교인이 개인 자격으로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숙박을 주된 용도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였고, 종교의식, 기도, 선교 용도로는 부수적으로만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이란 부동산 · 임대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1

제2조 제1항 제7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7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호에 따르면, 종교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할 경우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게 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른 교회 교인 등에게 임대하고 실비를 초과하는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된다.

(1) 원고는 영리 목적의 숙박업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입실시간 · 퇴실시간, 사용료 등을 안내하였고,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구분하여 사용료를 산정하였으며, 객실 이용자에게 샤워실, 운동시설, 바비큐장과 같은 편의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교회 소속 교인 외에 다른 교회 소속 교인, 대학교 선교 동아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대가로 다른 교회 소속 교인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 받았다.

(3) 나아가 ①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교회 소속 교인 등으로부터 받은 사용료 27,000,000원은, 원고가 같은 기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 합계 45,467,290원[3] 중 다른 교회 소속 교인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 6,473,309원[= 전체 비용 45,467,290원 × 다른 교회 소속 교인 등 방문 횟수 42회 /

3) 원고는 관리인 급여(연 1,440만 원)를 포함하여 관리비로 2011년 26,157,386원, 2012년 24,927,290원, 2013년 25,542,639원, 2014년 25,369,600원 합계 101,996,915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금전출납부 사본(갑 제13호증), 공동회의록(갑 제14호증), 예금거래내역서(갑 제15호증)에서 그에 부합하는 지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1

전체 방문 횟수 295회(= 253회 + 42회), 원 미만 버림] 또는 15,305,562원[= 전체 비용 45,467,290원 × 다른 교회 소속 교인 등 방문 인원 4,121명 / 전체 방문 인원 12,242명(= 8,121명 + 4,121명), 원 미만 버림]을 훨씬 초과하는 점, ② 원고가 소속 교인으로부터는 1인당 525원(= 사용료 합계 4,270,000원 / 방문 인원 합계 8,121명, 원 미만 버림)의 사용료만을 받은 반면, 다른 교회 소속 교인 등으로부터는 그 12배가 넘는 1인당 6,551원(= 사용료 합계 27,000,000원 / 방문 인원 합계 4,121명, 원 미만 버림)의 사용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비 변상 수준의 사용료만을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른 교회 소속 교인 등에게 사용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류하나

판사 문지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redacted]군 G 종교용지 100㎡
2. [redacted]군 H 잡종지 1,157㎡
3. [redacted]군 I 목장용지 1,573㎡
4. [redacted]군 J 잡종지 1,427㎡
5. [redacted]군 K 종교용지 193㎡
6. [redacted]군 L 종교용지 966㎡
7. [redacted]군 C 대 325㎡
8. [redacted]군 M 종교용지 821㎡
9. [redacted]군 N 종교용지 978㎡
10. [redacted]군 H 지상 건물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redacted]군 H 제에이동호

 [건물내역]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제1종근린생활시설 103.56㎡
11. [redacted]군 H 지상 건물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redacted]군 H 제비동호

 [건물내역]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59.4㎡

 부속건물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21.6㎡
12. [redacted]군 I 지상 철파이프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동물및식물관련시설 368㎡
13. [redacted]군 C 지상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다가구주택 1층 118.15㎡ 2층 118.05㎡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1

별지2

관계 규정의 표시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단서 생략)

○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1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조의5(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끝)